

헌 법 재 판 소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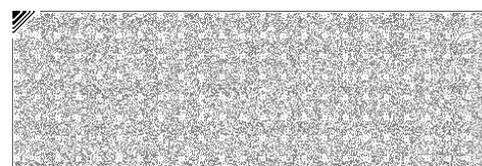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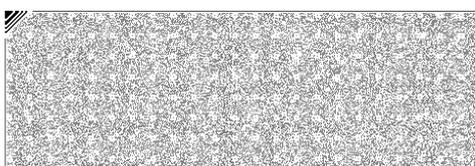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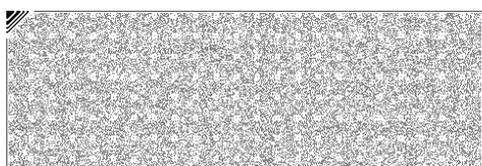
제목 사실조회

사 건	2016헌마738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등 위헌확인
제청법원	권가현 외 2
	대리인 변호사 김가연

위 사건의 심리에 필요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2조(자료제출 요구 등)에 근거하여 아래 사항을 조회하오니 **7일 안에**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아 래

1. 이동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제1항,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9 제1항에 따라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바, 제공하는 차단수단이 어떠한 것인지 여부 및 어떤 방식으로 위 차단수단을 제공하는지 여부
2. 위와 같은 차단수단의 제공을 위해 청소년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 관하여 추가로 수집·보관·처리·이용하는 정보는 무엇이고, 어떤 방식으로 수집·보관·처리·이용하는지 여부
3. 위 차단수단의 제공을 청소년과의 계약 체결 시 이른바 ‘유해정보차단 앱’의 설치를 안내하는 URL이 포함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경우,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위 유해정보차단 앱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청소년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한 전기통신서비스를 받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지 여부
4. 청소년이 위 유해정보차단 앱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유해정보차단 앱의 설치를



권고하는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안내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(안내 상대방, 안내 주기 등)

5. 청소년이 유해정보차단 앱을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한 이후 위 앱을 삭제하려고 하는 경우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. 끝.



수신자 SK텔레콤(주), (주)케이티, (주)엘지유플러스

시행 심판사무-12122 (2020. 7. 1.) 접수
우 0306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(재동 83) / 담당자 서기관 유준영
전화 02)708-3476 팩스 02)708-3596 / seta2525@ccourt.go.kr / 공개

